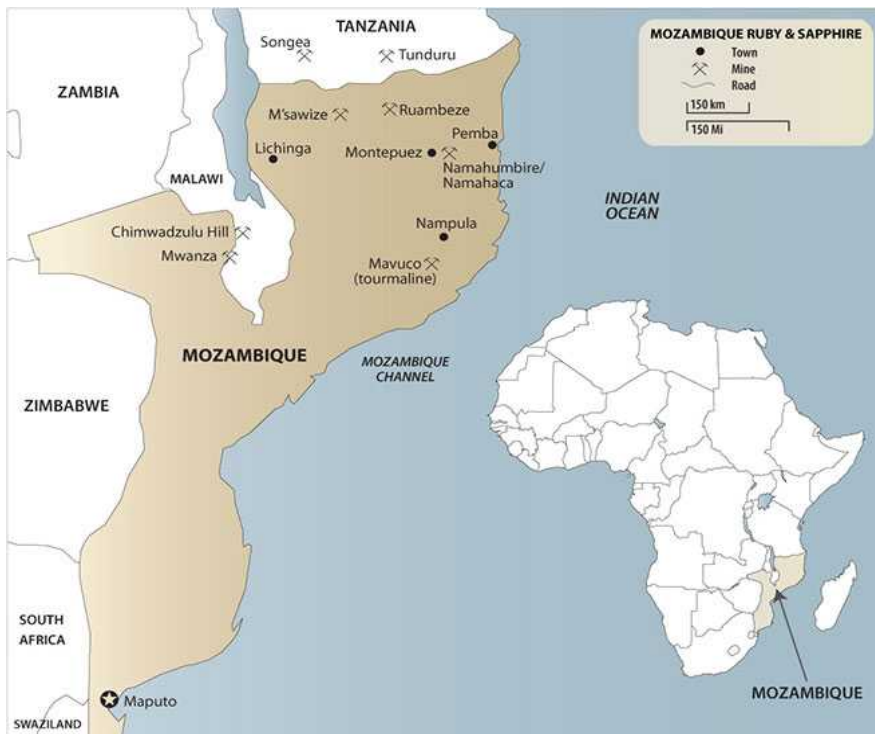


모잠비크 투자환경 및 제도



목 차

1. 투 자 제 도

- (1) 투자법 개요
- (2) 투자법 시행규정
- (3) 특별경제구역

2. 세 금 제 도

- (1) 과세제도
- (2) 세제혜택

3. 노동시장 및 노동법

4. 토 지 제 도

5. 금 융 환 경

(1) 투자법 개요

□ 투자법상 외국인

- 모잠비크 국적이 아닌 개인,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또는 모잠비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, 외국인 지분의 함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함.
- 외국인 투자자, 고용주,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.

□ 투자법 적용 범위 및 목적

-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 및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광물 탐사 및 생산, 석유·가스 및 자원개발 산업은 투자법 적용에서 제외됨.
- 투자법이 적용되는 투자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, 국가 경제정책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.

□ 투자 재산권의 보호 및 해외 송금의 보장

- 승인된 투자에 대하여는 산업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, 상품 및 재산의 보장, 안전을 보장하며, 중대한 국익과 공공 안전 및 질서를 이유로 국유화하거나 강제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시행함.
- 정부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투자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,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, 보상평가는 권한을 가진 전문 감사법인 또는 특별 선임된 팀에 의하여 90일 이내 수행됨.
- 적법하게 승인된 투자에 대해서는 아래 자금의 해외 송금을 보장함.
 - a)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적법한 이익
 - b) 기술이전이나 공여와 관련된 간접투자에 대한 대가 또는 로열티
 - c) 투자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의 이자소득 또는 대출금의 상환
 - d)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상금
 - e) 투자금으로 회수해야 할 외국 자본금

□ 외국인 직접투자의 등록 및 권리의 양도

-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인가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 자금을 모잠비크 내로 반입하고 사업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.

- 투자 지위 또는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, 지위 양도신청은 CPI (투자청) 또는 MPD(기획개발부)에 제출하여야 함. 이 경우 지분양도에 의한 해외 송금 시에도 투자법과 규정에서 정한 보장과 인센티브가 부여됨.

□ 분쟁 해결

- 투자법 및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관계 사법당국이 해결함,
- 모잠비크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아래 규정에 의거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.
 - Rul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에서 정한 국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ICSID 규정 및 추가 규정
 - 파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정 등

□ 환경 보호

- 투자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, 공해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위생 설비에 대한 평가와 연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.
-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법의 규정과 국제협약을 따라야 함.

[2] 투자법 시행규정

□ 투자법 시행규정 관리주체

- CPI와 GAZEDA*는 관련 법 등을 기초로 정부 정책 및 전략에 따라 모잠비크 경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투자사업을 지원 및 수행함.
 - * GAZEDA는 '07. 12월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, ZEE(Special Economic Zone : 특별경제구역) 및 ZFI(Free Industrial Zone : 자유산업구역) 등 특별경제지역의 설립,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함.
- CPI와 GAZEDA는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, 관련 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.

□ 외국인 직접투자 최소 한도

- 투자금 최소 한도는 25백만Mts(USD85천불 상당)임.

□ 투자 승인 신청서 제출

- 투자 승인 신청서는 CPI 또는 GAZEDA에 포르투갈어 혹은 영어로 제출해야 함.

□ 승인권한 및 기간

- 승인 신청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투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음.
 - a) 지방장관 : 1,500백만Mts 이하 내국인 투자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
 - b) CPI청장 : 2,500백만Mts 이하 내·외국인 투자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
 - c) MPD장관 : 13,500백만Mts 이하 내·외국인 투자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
 - d) 내각 : 아래 각 항의 투자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
 - 13,500 백만 초과 투자
 - 10천 ha 초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투자 (임업 관련 투자 별도)
 - 100천 ha 초과 토지를 필요로 임업 투자
 - 기타 사업특성상 검토가 필요하거나 MPD 장관이 내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CPI 또는 GAZEDA는 승인 결정일로부터 48시간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. 승인받지 못한 경우 투자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.
- 승인된 사업은 별도 조건이 없으면 승인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 시행되어야함.

□ 외국인 직접 투자의 등록

-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앙은행(Bank of Mozambique)에 등록을 하여야함.

□ ZFI(자유산업지역) 특례

- ZFI 특례를 희망하는 기업은 GAZEDA에 승인을 신청해야 함.
- ZFI 정책에 의한 사업착수 기간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 개월이며, GAZEDA에 의해 연장 가능함.
- ZFI 기업은 연간생산량의 30%까지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,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관세, 부가가치세, 소비세 등이 과세됨.
- 국내 기업이 IFZ 개발자 또는 기업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수출로 간주됨.

(3) 특별경제구역

□ GAZEDA의 역할

- GAZEDA의 주요 업무는 ZEE 및 ZFI에 대한 투자사업 개발·조정, 투자신청 접수·점검·등록업무, 투자 사업의 승인, 투자 증명서·면허증의 발급 등임.

□ 나탈라 특별경제구역 (Nacala Special Economic Zone)

- Nacala 지역은 모잠비크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,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중심지이며, Nacala 항구는 수심이 깊어 대형화물선의 접근이 용이함.
- 현재 모잠비크에서 유일한 ZEE임.

□ ZFI (산업자유지역)

- 수도인 마푸토와 인근 마틀라 지역 500ha가 ZFI로 지정되어 있으며, 항구에서 10분 거리,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함.



□ 특별경제구역 혜택

- ZEE와 ZFI는 전략적 산업육성지역으로서 각종 세제혜택 및 세제 이외의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됨.
 -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
 - : 건축 자재, 장비, 액세서리, 예비 부품 및 기타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구입시
 - 법인세 혜택
 - a) IRPC(법인세) 면제 : 최초 3~5 회계년도
 - b) IRPC 50% 감면 : 4~10 회계년도
 - c) IRPC 25% 감면 : 11~15 회계년도 등
 - 토지사용 수익권 및 환경영향평가 제공
 - 국외 송금절차 간소화 및 환전 보장 등

〈참고〉 법인설립 절차

회사명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
- 등기소(Legal Entities Registrar)

주주에 의한 회사 정관 작성
- 공증사무소 등 전문인력에 의한 검토 필요

임시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예치 증명서 발급
- 지역 은행

사업자 등록증 발급, 관보에 회사 설립 공시
- 마푸토 소재 등기소

세무등록 및 세금등록번호(NUIT) 취득
- 관할세무소

운영관련 라이선스 신청
- Presidente of Conselho Municipality

세무서에 사업개시 신고
- Reparticao de Financas

사업개시 및 직원 후보자 신고
- 고용센터(provincial employment center)

사회보장시스템에 직원 등록
(social security system)

직원보상보험가입
(workmen's compensation insurance)

(1) 과세제도

□ 세제의 구분

- 서구식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,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직접세와 소비에 대한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음.
- 소득세에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으며, 간접세는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관세로 이루어지고, 이외에 사회보장세, 배당세, 부동산세 등이 있음.

□ 소득세

- 법인소득세의 경우, 거주법인*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, 비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모잠비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.
 - * 모잠비크에 본사 또는 주요 통제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 혹은 모잠비크에 사업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
- 개인소득세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소득이 과세 대상이며, 모잠비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모잠비크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과세함.
- 과세대상은 모든 소득과 이득이며 관련 경비는 공제가 가능함. 손실발생액은 소득세에서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며, 자본소득 또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됨.
- 세율은 일반기업 및 지사의 경우 32% 단일세율로 누진세 제도가 없으며, 2011년부터 농업회사는 10%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.
 - 매출 USD71,500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세금제도가 적용됨.
- 거주기업의 해외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세액공제를 시행하며,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이월 가능함.
- 외국인이 2년 이상 모잠비크 기업의 지분 20% 이상을 투자해 지급받는 배당금에는 과세하지 않음.

□ 원천징수세

- 배당소득세 : 별도 감면조건이 없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20%의 원천세가 부과됨. (마푸토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10% 부과)
- 이자소득세 : 별도 감면조건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0%의 원천세가 부과됨.
- 로열티 : 별도 감면조건이 없는 경우 로열티에 대해 20%의 원천세가 부과됨.

- 기타 : 통신서비스 및 장비, 국제운송서비스와 관련,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 10%의 원천세가 부과됨.

□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

- 부가가치세 : 표준세율은 17%이나, 은행, 건강, 교육, 자선단체의 경우 면세되며, 수출시에도 면세됨.
- 특별소비세 : 특정 소비성 상품에 대해 20%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.

□ 관세

- 관세율은 원료 2.5%, 자본재 5%(Class K), 중간재 7.5%, 소비재 20%를 각각 적용함.
- SADC(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) 협정에 따라, '08년부터 SADC 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□ 부동산 세금

- 부동산세 : Maputo와 Matola 소재 부동산에 대해 주거용은 최고 0.4%, 사무용은 최고 0.7%의 지방세가 부과됨.
- 인지세 : 건물 명의양도시 0.4%, 주식지분 양도시 0.2%의 인지세가 부과됨.
- 토지사용권 명의이전 시 통상 양수자가 2%를 부담함.

<기업에 대한 기타 세금>

- 사회보장세 : 총 7%의 사회보장세(직원보수 기준 고용주 4% + 직원 3%)가 부과되며 금액의 상한은 없음.
- 양도시 등록세 : 통상 건물 양도시 양수인에게 2%의 등록세가 부과됨.
- 경제활동세 :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됨.

□ 세무제도 및 협약 등

- 세무자료의 제출지연, 세금 미납, 세무기록 공개 지연 시 100~33,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, 고의탈세는 최고 징역 8년, 과실의 경우 최고 징역 2년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음.
- 회계연도는 매년 1~12월로, 기업은 5월, 7월, 9월에 임시 법인세를 납부하며 금액은 전년도 과세금액의 80%임.
- 이태리, 모리셔스, 포르투갈, 남아공, UAE, 마카오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음.

[2] 세제혜택

□ 개념

- 세제혜택은 국가경제의 촉진과 자국민에 대한 기술이전 등 공공 이익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며, 세금감면 형식으로 부여됨.

□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 세제혜택

-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
 - 관세표(*PautaAduaneira*)에서 K class(자본재)로 구분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부여함.
- 법인소득세의 5-10% 공제
 - 마푸토시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투자금액의 5%, 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%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5년간 공제함.
(단 투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 및 사용되는 고정자산에만 해당)

□ 급성장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

- 자원은 풍부하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제활동이 미약한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.
- Zambeze강 유역, Niassa주, Nacala 지역, 모잠비크섬, Ibo섬, 기타 관련 공인기관이 인정한 지역이 해당됨.
- 급성장 지역에서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, 총 투자액의 20%까지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하며,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와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□ 세제혜택의 취소, 중지 혹은 제외

- 아래와 같은 경우 세제혜택이 취소 또는 중지됨.
 - 국세 미납 또는 규정에 따른 증빙자료 미제출
 - 조세법 위반, 혹은 다른 법령을 위반했지만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
 - 기타 세제혜택 부여 조건 불이행
 - 승인기한 만료 또는 해제 조건 발생
-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은 세제혜택 중지 또는 세제혜택 법적근거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내 신고 의무가 있음.
- 세제혜택이 적용된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.

□ 노동시장 개황

- 약 10백만의 근로자중 8%만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으며, 공식 실업률은 20% 대임.
- 노동법상 정규 근로자 해고시 134주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며,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 신기술 도입 등이 어려움.
- 모잠비크는 CONSILMO 및 ATM 등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, 친정부 성향이며 기업과 파트너 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.

□ 외국인 근로자

- 외국인 고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, 위반 시 벌금이 매우 높음.

종업원 수	외국인 고용 가능비율
Up to 10 employees	10%
10-100 employees	8%
More than 100 employees	5%

-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는 산업부(Ministry of Industry)가 주관하고 있으며 통상 3-6개월이 소요됨.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30일 관광비자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도 함.

□ 최저임금

- 모잠비크는 업종별로 다양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(월 기준).
 - a) 농축산업 - 2,005 MZM
 - b) 수산업 - 2475 Meticaís
 - c) 광산업 - 2,890 MZM
 - d) 제조업 - 3,100 MZM
 - e) 베이킹 - 2,850 MZM
 - f) 전기, 가스, 수도 - 3,222 MZM
 - g) 건축업 - 2,775.5 MZM
 - h) 비금융 서비스 - 2,996.25 MZM
 - i) 금융서비스 - 5,320 MZM
 - j) 일반행정 - 2,380 MZM

□ 노동법규 일반 및 특징

- 모잠비크는 서구식 노동법을 보유하고 있어 계약에 의한 고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고 역시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
- 노동법에서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며 성별 및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는 물론, HIV 감염자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.
- 사생활 보호와 관련, 고용주는 근로자 가족, 성별, 건강, 정치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으며, 특히, 고용주는 직장에서 피고용자의 업무능력을 제어하기 위한 원격 감시수단을 사용할 수 없음.

□ 여성·미성년·임시직 고용

- 여성근로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음.
 - 자녀 모유 수유를 위해 30~60분에 한 번씩 수유를 하더라도 임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음.
 - 임신중 및 산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지 않음
 -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1년간 최대 30일까지 직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.
- 15~18세 미성년자의 고용은 가능하나, 근무시간은 주당 최대 37시간임
 -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,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음.
 - 12~14세 아동의 고용은 노동부, 보건부,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업무에 한하여 가능함.
- 임시직 근로자의 채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.
 - 근로자의 교체로 일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
 -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생산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많을 때
 - 현재의 조건 하에서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일 때
 -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공사, 공공업무, 수리작업 등 일시적인 작업의 경우
 - 앞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하청 혹은 외주 업무
- 임시 고용계약의 체결은 최대 2년을 넘지 않으며, 상호 협의로 2회 갱신 가능하고, 2회 초과 계약은 무기 계약으로 간주함. 단 중소기업(100인 이하)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 첫 10년간 임시직 고용이 가능함.

□ 토지의 개념

- 토지는 국가자산으로 매각, 양도, 저당,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, 개인 또는 기업(외국인 포함), 지역사회 등이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음.

□ 외국인 토지사용수익권 취득자격

- 토지사용권은, 개인·법인 혹은 지역사회 등이 최소 10년 이상 선의로 사용한 경우와, 개인·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부여됨.
-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의 경우 토지사용 및 수익권자가 될 수 있음.
 - 최소 5년 이상 모잠비크에 거주한 개인
 - 관련 법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

□ 토지사용 허가

- 토지국(Cadastre Services)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최초에는 임시허가를 주는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2년, 내국인의 경우 5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됨.
- 최종 사용승인은 50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50년까지 갱신이 가능함. 단 지역공동체 점유분, 개인 거주용, 지자체 및 정부가 개발하는 경우 기한조건이 적용되지 않음.
- 허가처리 소요기간은 최대 90일로 되어 있으며,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.
 - a) 내용을 기입한 토지사용신청서 양식
 - b) 개인은 신원증명서, 법인의 경우 법인증명서(the articles of association)
 - c) 희망토지의 위치도 스케치
 - d) 관할기관이 승인한 개발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
 - e) 지역사회와의 상담보고서
 - f) 공개통지문(the public notice)의 사본
 - g) 임시승인료 지불보증금 예치서
 - h) 연간사용료 지불 증명 영수증.
 - i) 경제활동 목적으로 토지 사용시, 개발계획 및 기술 의견서 제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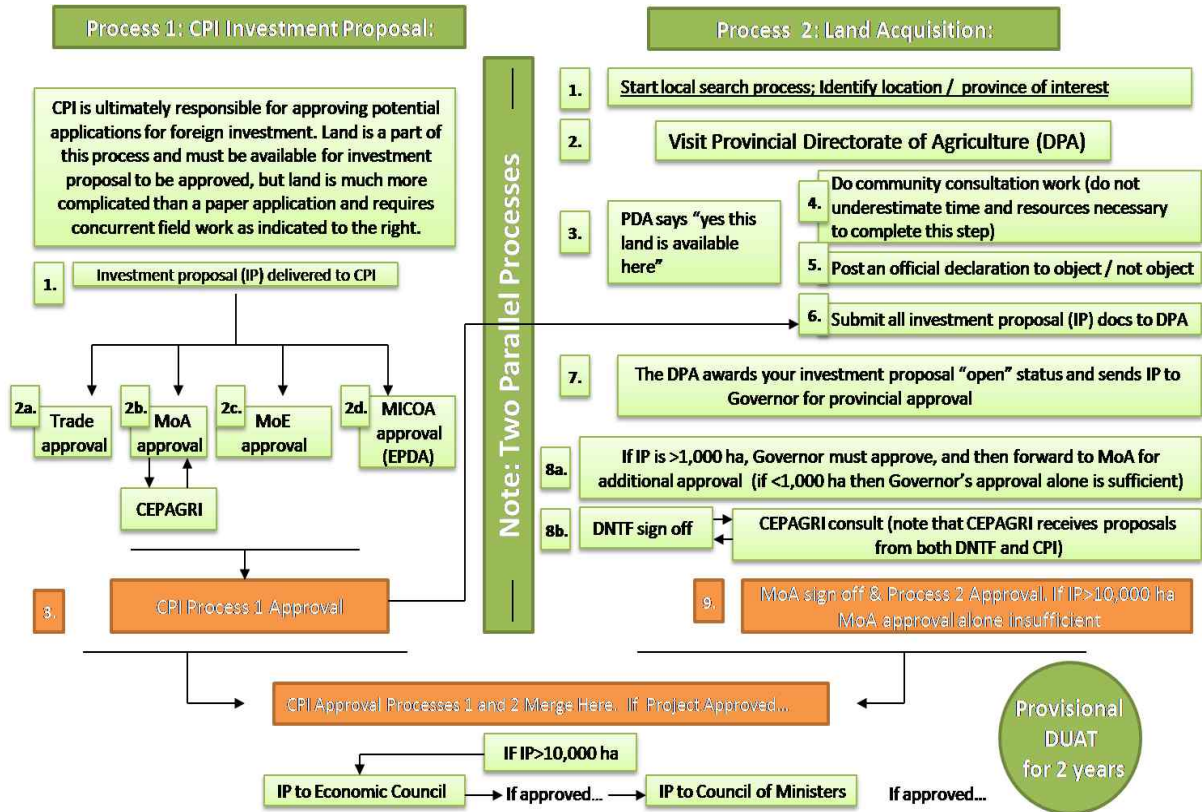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 필요

- 토지사용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고용창출,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.
- 지방지리토지국(SPGC) 기술자, 군수 또는 대리인, 시군 농업 및 농촌개발국장, 지역 주민, 토지사용신청자 등이 사전협의를 참여하도록 토지법에 명시되어 있음.

□ 토지사용료

- 토지사용료는 위치, 크기, 사용목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금액은 아래와 같음.
 - 축산업, 영년생작물, 야생동물사육(면적계수 적용제외) : 5.MT/ha(약 USD0.17)
 - 농업 37.5MT/ha (약 USD1.23)
 - 관광, 휴일주택, 교류 목적으로 사용되는 1ha 이하 소규모 부지로 해안선 인접 공용부지 3km 이내 지역 500MT/ha (약 USD16.7)
 - 기타 부지 : 75MT/ha (약 USD2.46)
- 연간 사용료는 토지국에 1~3월 일시 납부하거나 2회(3월말 및 6월말) 분납함.
-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최고 3년까지 토지사용료 면제를 신청 할 수 있음.

CPI 투자 승인절차 및 토지확보 절차



□ 금융현황

- 2012년 현재 상업금리는 대출 22.9%, 예금 13% 수준이며, 2011년 인플레이션율은 14.98%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,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.
- 달러 대출은 수출 기업에만 가능하며, 대출이율은 약 9%임.
-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, 기업 및 개인의 2.2%에 대해서만 모잠비크 공공기관에 의해 신용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, 민간부문의 신용평가 및 관리는 전무한 실정임.
- 모잠비크 금융기관간의 신용정보 공유체계가 없어 개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거래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움. 다만 거액거래 대기업들에 대한 신용기록은 모잠비크 중앙은행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음.
-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사용 권한이 담보,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은행에서 대출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
- 전반적 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이 모잠비크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.

□ 금융기관 영업현황

- 10개의 상업 은행이 있으며, 주로 수도인 마푸토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의 영업활동은 매우 제한적임.
 - Millennium BIM, SARL
 - Barclays Bank (Moçambique), SARL,
 - Standard Bank (SB), SARL,
 - Banco Comercial e de Investimentos (BCI), SARL,
 - Banco Internacional de Comércio (ICB), SARL,
 - Mauritius Commercial Bank (Moçambique), SA
 - African Banking Corporation (Moçambique) (ABC), SARL,
 - First National Bank
 - Banco Mercantil e de Investimento (BMI), SARL.
 - United Bank for Africa (UBA)
- 보험사는 5개가 영업을 하고 있음
 - Emose - Empresa Moçambicana de Seguros, SARL,
 - GA - Global Alliance (Moçambique), SARL,
 - Hollard Moçambique Companhia de Seguros, SARL.
 - MCS -Moçambique Companhia de Seguros, SARL
 - Impar

□ 농업 관련 금융지원

- GAPI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모잠비크 정부, 개인, 시민사회, 지역사회개발재단이 투자한 공공기관으로, 농촌지역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에 사업개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, 대출비중은 중소기업 30%, 농촌금융 70%임.
- CEPAGRI(농업진흥센터)는 농민들과 중소 농기업, 농민단체 등에게 금융 및 판매 서비스, 영농지도 서비스를 제공함.
- ADIPSA는 덴마크 국제개발청이 투자한 금융기관으로 참깨, 땅콩, 두류, 서류, 과일 등 전략적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, 금융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NGO를 지정하여 소액 대출을 담당하고 있음.
- FDA는 영세농 자금지원과 농업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 기금으로 관개수로 청소, 냉동창고, 농산물 저장고, 농산물 가공, 처리, 포장 등을 지원하며 자금집행은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운영함
 - 기금총액은 USD10백만으로, 시중은행 대출금리 24%의 절반 이하인 10%의 특별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, 대출대상은 연 소득 USD5만 이하 농가임.